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71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임호선·강경숙·윤준병

진성준·임미애·이상식

문대림·이정문·이연희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

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경제적 요인 등에 관계없이 개인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와 식품 구매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 제2절에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료품점 운영, 식료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와 식품접근성 지원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경제적 요인 등에 관계없이 개인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u>
8.·9. (생 략)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생 략) <u><신 설></u>	8.·9.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와 식품 구매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제23조의8(식품접근성 지원 등)</u> <u>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u>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료품점 운영, 식료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와 식품접근성 지원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